

# (주)테크웰 협력사 행동규범

## 「비즈니스 가이드라인」

평소 귀사의 성원과 협력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.

(주)테크웰(이하 “당사”)는 협력사와의 모든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준법 및 윤리경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위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당사는 아래와 같이 「비즈니스 가이드라인」을 제시하오니, 적극 동참하시어 당사와의 업무 과정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.

----- ■ 다            음 ■ -----

**당사의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력사 혹은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**

**1. 금전, 선물 등 어떠한 명목의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.**

- 금        전 : 현금, 수표, 경조금(축하금, 조의금) 등
- 현금성자산 : 상품권, 항공권, 회원권, 문화상품권, 공연티켓, 놀이시설 이용권  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법인카드, 기프트카드 등
- 선        물 : 고가의 사은품 등

**※ 이 외에도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습니다.**

- 주식, 채권을 무상 또는 저가로 매입
- 거래선의 자산(차량 등) 및 제품 등을 저가 매입
- 업무상 관련이 있는 비상장 거래선의 지분 취득

**2.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규정을 무시한 채 특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**

- 특혜 : 고가 구매, 저가 판매, 입찰정보 유출, 견적조작, 들러리견적,

자격미달 거래업체 등록, 부당한 물량 밀어주기 등

3.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 차용 또는 대여를 하지 않습니다.

- 업무 관계를 통해 유대관계를 형성한 협력사 임직원과 금전 관계 금지
-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 없이 금지

4. 금전적, 물적 피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청탁을 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.

- 금전적 물적 피해 : 협찬요구, 회식비용 전가, 차량 무상사용 등
- 대가를 목적으로 한 거래 성사의 약속
- 퇴직 후 고용 약속 등 미래 보장에 대한 청탁
- 거래처 소개, 지인 등의 채용 승진 등 인사 청탁, 등

5. 과도한 식사, 골프, 술 접대 등 어떠한 명목의 접대, 향응 등을 받지 않습니다.

- 과도한 식사 : 일식당, 한정식집, 호텔 등 고급식당에서의 식사
- 술 접대 : 유흥업소 등에서의 접대
- 편의 : 업무 범위를 벗어난 교통, 행사지원, 숙박 제공 등

6. 직무상 권한을 이용하여 규정을 무시한 채 특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- 특혜 : 고가 구매, 저가 판매, 입찰정보 유출, 견적조작, 들러리견적,  
자격미달 거래업체 등록, 부당한 물량 밀어주기 등

7. 당사의 유·무형 정보자산이나 내부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습니다.

- 정보자산 : 영업기밀, 입찰정보, 기술개발 정보(실패한 기술 데이터 포함),  
소프트웨어, 인사 및 경영정보, 고객 및 협력사 정보, 임직원의 신상정보 등

8. 핵심인력의 유출을 주도하거나 협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9. 협력사와의 계약서를 준수하고, 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10. 기타 청결한 조직문화의 유지·계승 활동을 저해하고 기업가치 및 회사 이미지 등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(주)테크웰 모든 임직원은 상기 「비즈니스 가이드라인」을 준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, 이와함께 당사와 거래하는 협력사에서도 공정한 거래를 위해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고 거래관계 중 불미스러운 사항이 발생하여 당사의 관련자 및 협력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.

또한 상기 「비즈니스 가이드라인」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나 제보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주소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윤리경영 제보처>

■ 테크웰 홈페이지(제보) : [www.techwell.kr](http://www.techwell.kr)(공지/공고/사이버신문고)

■ 테크웰 윤리경영실: 031-227-8474/ [esther.kim@techwell.kr](mailto:esther.kim@techwell.kr)

당사는 제보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.

2023. 09. 01

주식회사테크웰

< 서 약 서 >

◆ 서약자 : (협력사) 대표자 (성명) (서명)

서약자 본인 및 소속 임직원은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